#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98

발의연월일: 2020. 8. 5.

대표발의자 : 이달곤 · 홍준표 · 강기윤

하영제 · 강대식 · 윤두현

윤한홍 · 김태호 · 최형두

서일준 · 김예지 의원

(11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각종 FTA 체결과 D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등에 대비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최 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장기화로 내수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고 대 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어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 화와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 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
- 나.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조).
- 다.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제9조).
- 라.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조).
- 마. 농협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4조).
- 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취득하는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9조).

###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 0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0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2020년"을 각각 "2030년"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20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67조 중 "2020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2020년"을 "2030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	한 감면) ①
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	
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	
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	
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	
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	
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	
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	
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u>	<u>2</u>
<u>020년</u>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u>030년</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	
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를 추징한다.	

- 1. 2. (생략)
-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다.
- 1. ~ 3. (생략)
- ③ ④ (생 략)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저

-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저

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

1.•2. (현행과 같음)
2
<u>2030년</u>
<u>.</u>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에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2030년
<u>2030 1</u>
, @
2
<u>2030</u>
<u>년</u>
세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 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 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 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 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 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 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 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 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 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3. (생략)

②·③ (생 략)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저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 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

F 10000
<u>2030년</u>
 1. ~ 3.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네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 5. (생략)
- ② (생략)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저 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

<u>2030년</u>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세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1. ~ 3. (생략)
- ② (생략)
-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 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 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 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u>2030년</u>
<u>.</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2030년</u>

#### ④·⑤ (생 략)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저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70조제1항에 따 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 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 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 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 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 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 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④·⑤ (현행과 같음)

∥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u>2030년</u>

## ② (생략)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 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② (현행과 같	음	)		
제	167조(조합법 연	1	등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	과	·세특i	划)	
					203
	<u>0년</u>				
	<b>.</b>				
제	177조의2(지방	세	감면	특리	웨의
	제한) ①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
지 아니한 감면	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	<b>니하다</b> .

- 1. (생략)
-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 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 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 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③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2030년</u>
②·③ (현행과 같음)